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2016. 6.30(목)~7.18(월)

강원도교육청(6.30), 서울시 인재개발원(7.1), 한국철도공사(7.5),
광주광역시청(7.7), 전북도청(7.8), 부산광역시청(7.12),
대구문화예술회관(7.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7.15), 정부세종청사(7.18)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청탁금지법 PPT 자료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1
I.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경과 및 의의	23
II.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24
1. 법률 적용 대상	24
2. 부정청탁의 금지	25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29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32
5. 징계 및 벌칙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요 내용	37
1. 윤리강령	40
2. 부정청탁의 금지 등	40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41
4.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 방법	42
5. 신고자 보호·보상 등	45
6. 기타	46
 청탁금지법 - 시행령(안) 2단 비교표	47



청탁금지법 PPT 자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발표순서



1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2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부정청탁의 금지
- ◆ 금품등 수수 금지
- ◆ 위반행위 신고·처리
- ◆ 신고자 보호·보상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2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공무원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인식의 차이’
54.4%p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의 차이가 시사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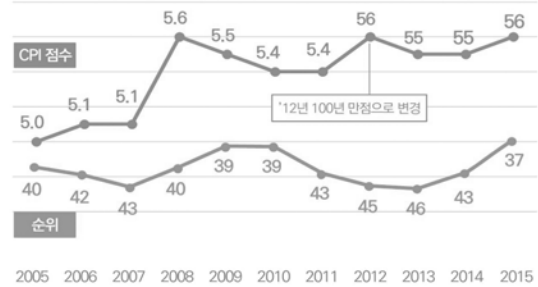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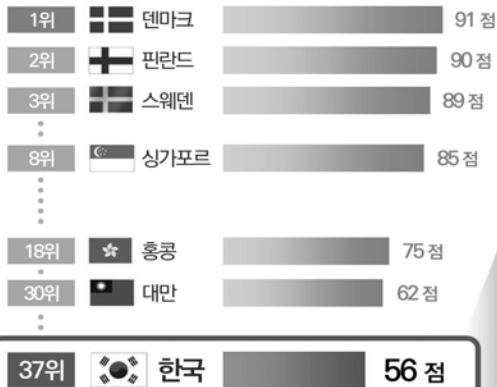
-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 국민들의 시각에서 ‘부패’를 공직자들은 관행으로 여겨 문제의식을 갖지 못함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2

답보상태인 한국의 청렴수준 향상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 출처: 국제 투명성 기구(TI, '16.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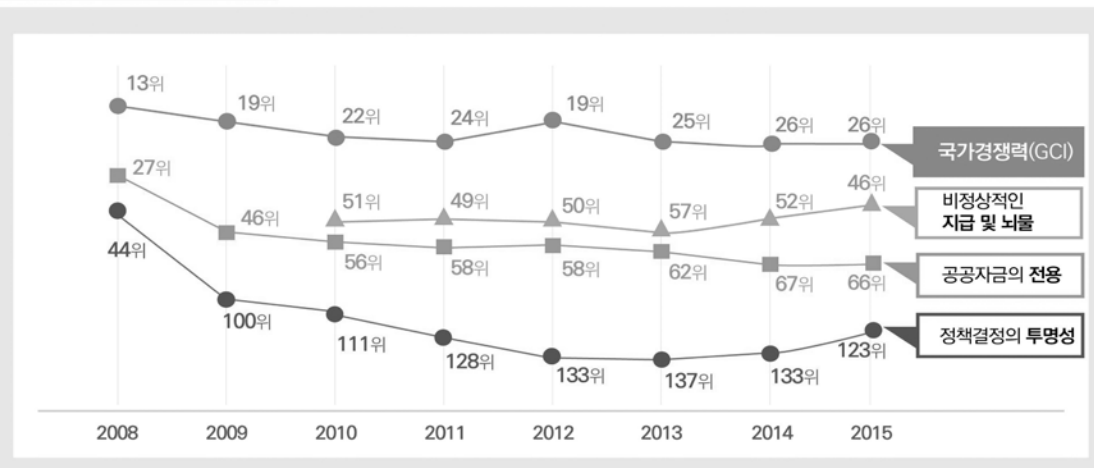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국가경쟁력에 비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2015 국가 경쟁력 지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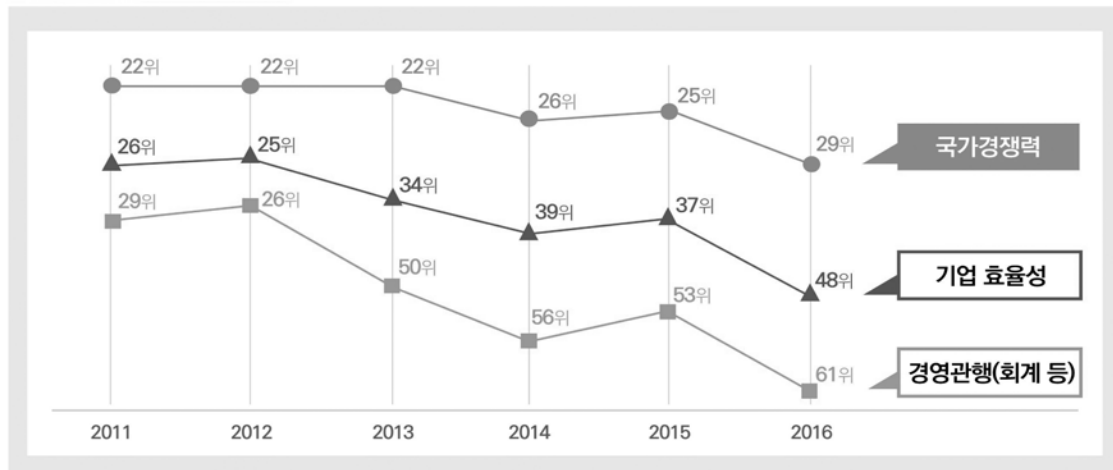
※ 출처: 세계경제포럼(WEF, '15.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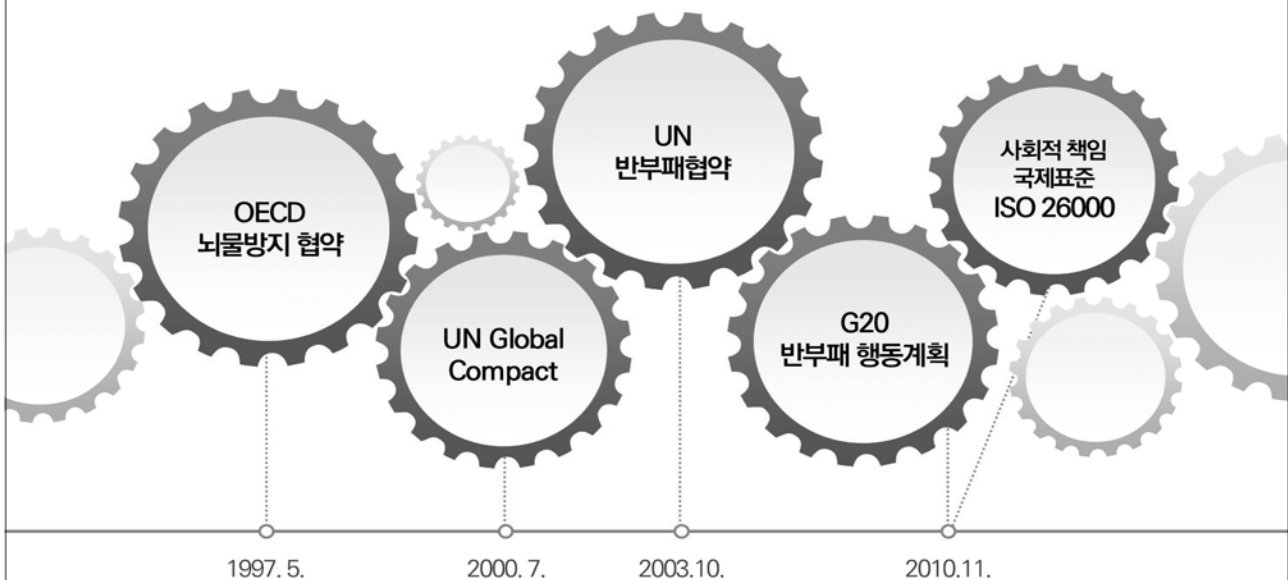
■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 민간부문도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

2016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 ※ 출처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16.5월)



■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선의를 공직자등의 보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금품등 제공으로
선의의 공직자등 피해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시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법률 적용대상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원 상·하급·평가 등을 하는 자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인가·허가·면허·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지위·권한 남용

위 1호부터 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들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촉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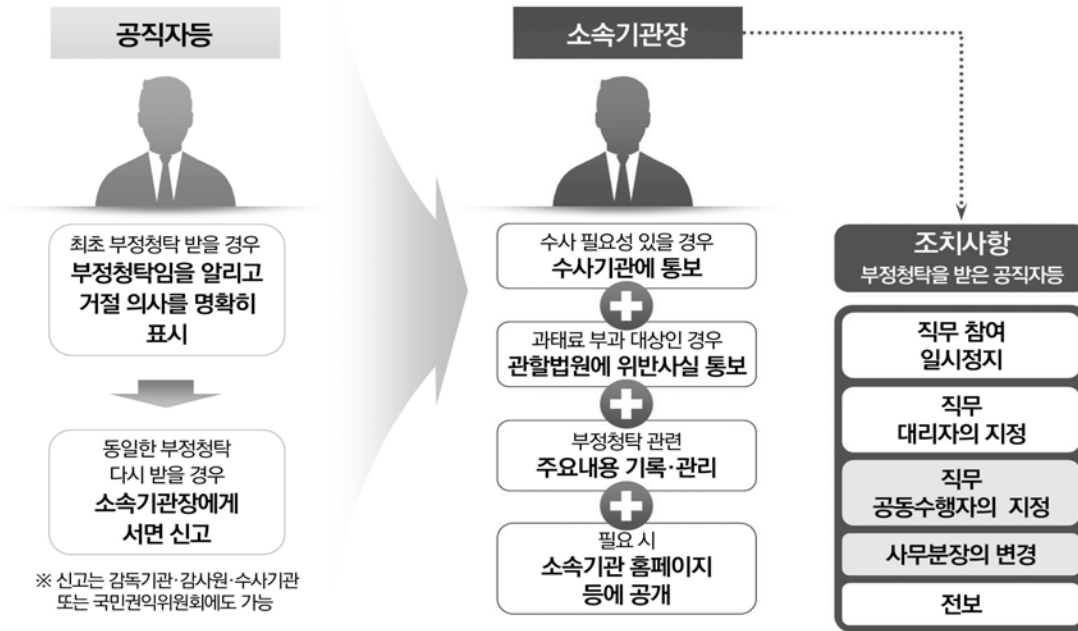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예외사유 자세히 보기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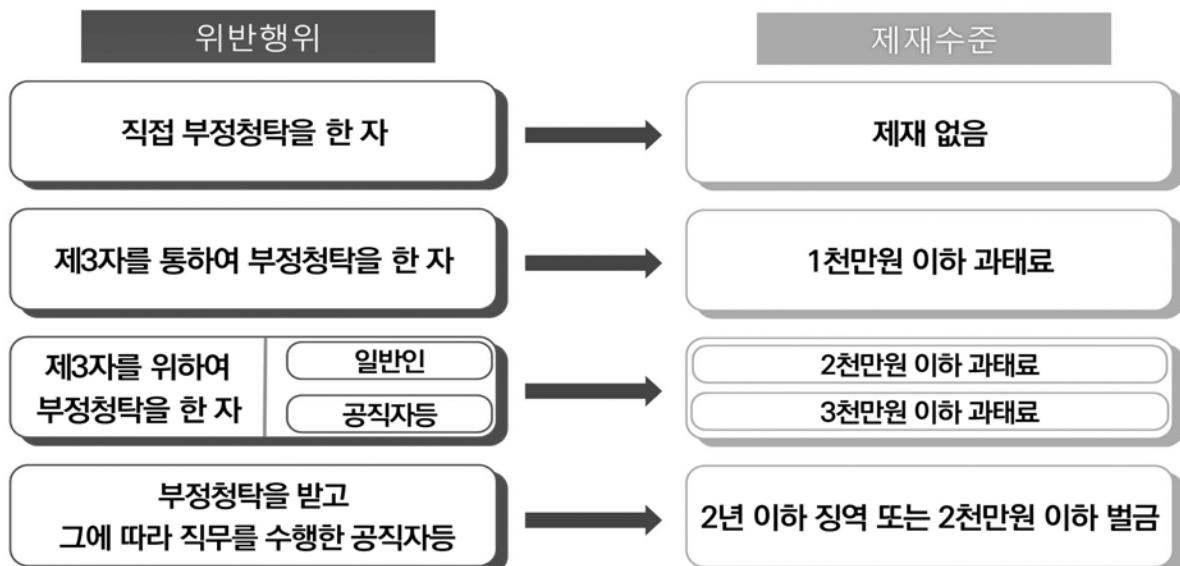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시 제재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 (※ 위반행위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여 별칙과 징계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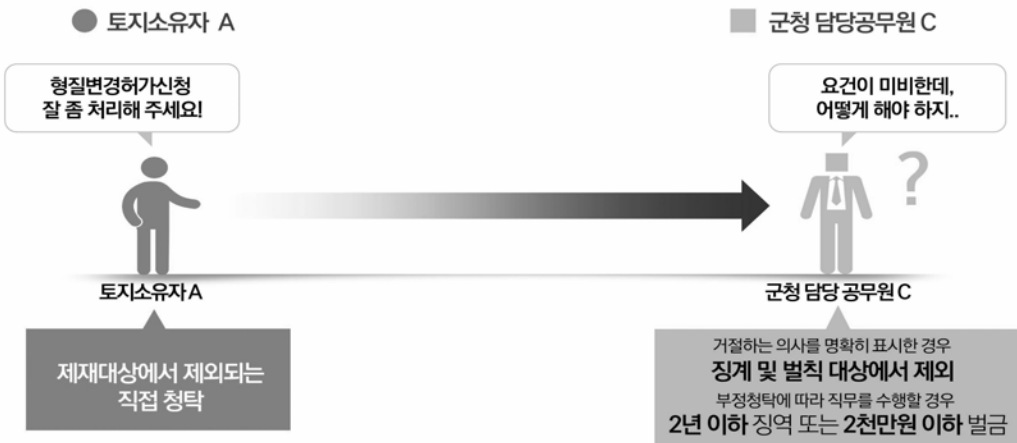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1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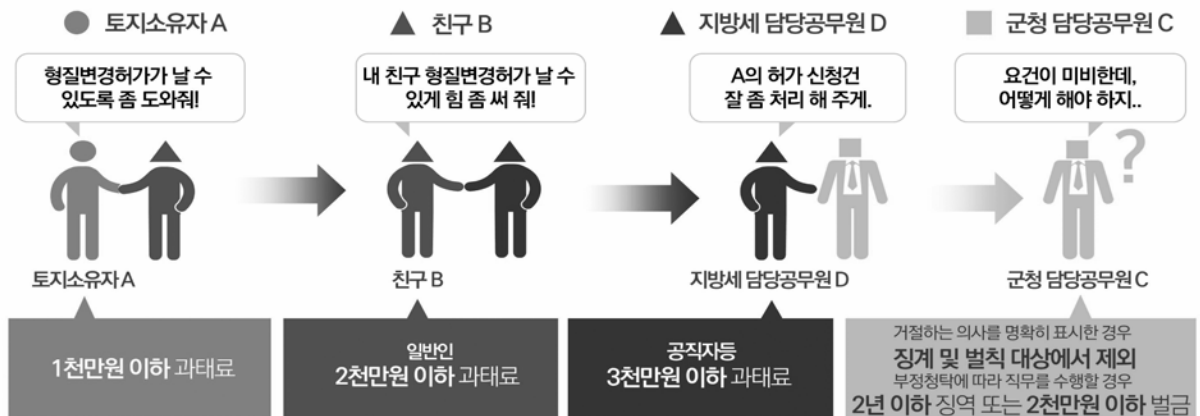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2

복수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군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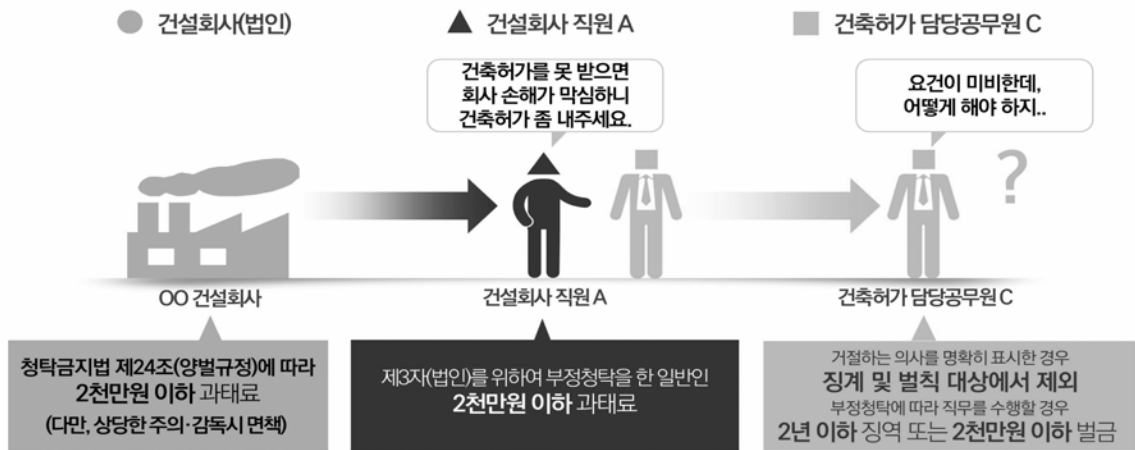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3

법인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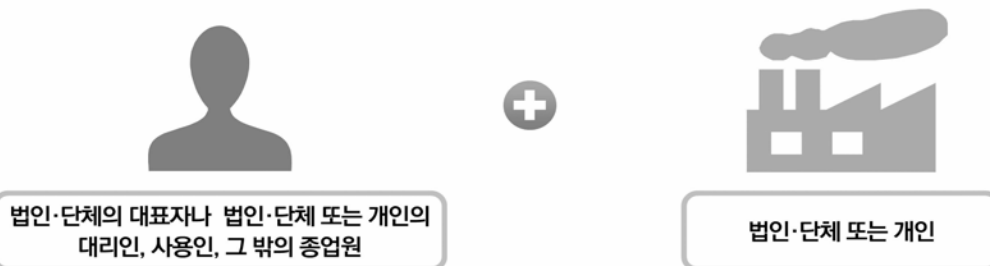
○○ 건설회사(주) 소속 직원 A가 건축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양벌규정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금품등 수수 금지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 '금품등'의 정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금품등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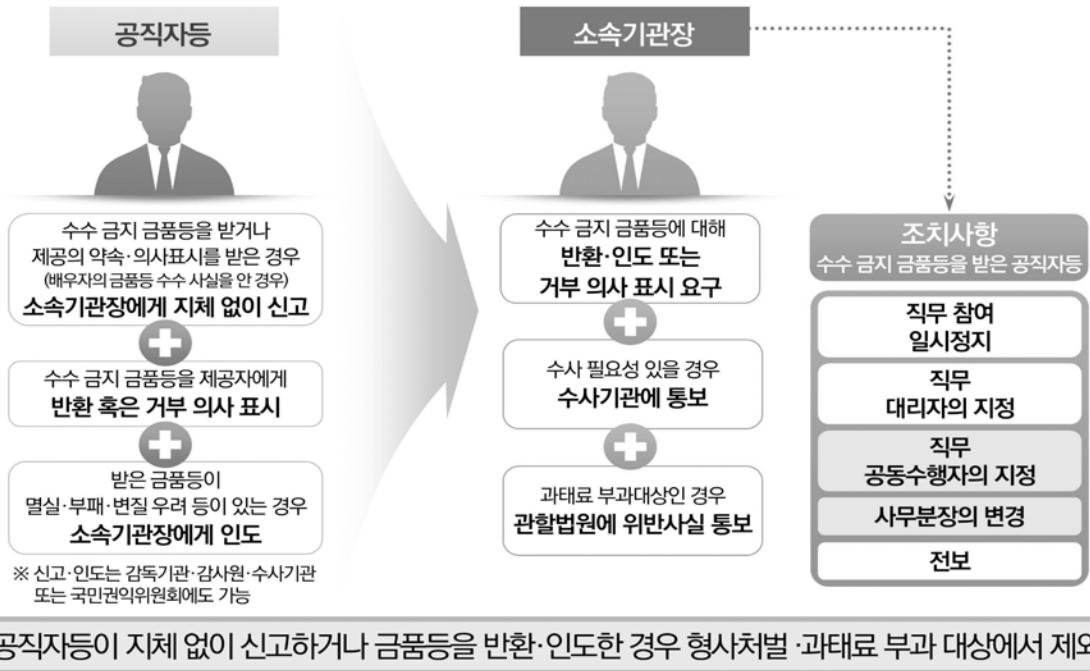
예외사유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1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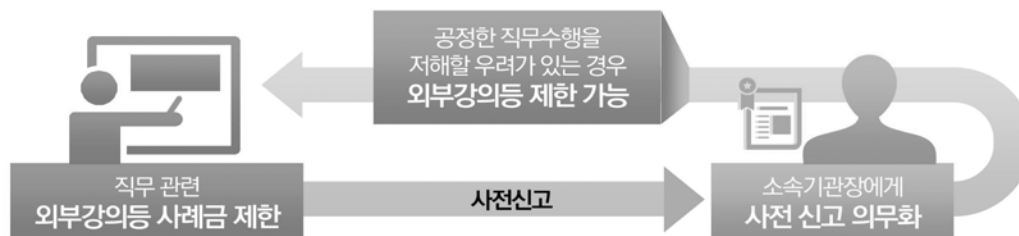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
-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1

회계연도 관련 사례

○○시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A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
(※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음)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2

1회 관련 사례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 양벌규정(청탁금지법 제2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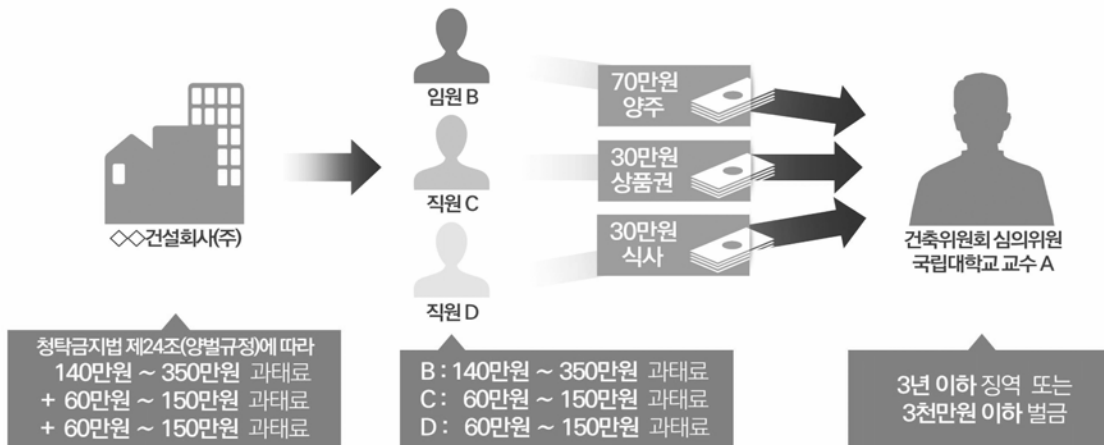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3

동일인 관련 사례

○○도 건축위원회에 ◇◇건설회사(주)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 이에 ◇◇건설회사(주) 소속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 소속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소속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립대학교 교수 A에게 각각 제공 또는 접대를 한 경우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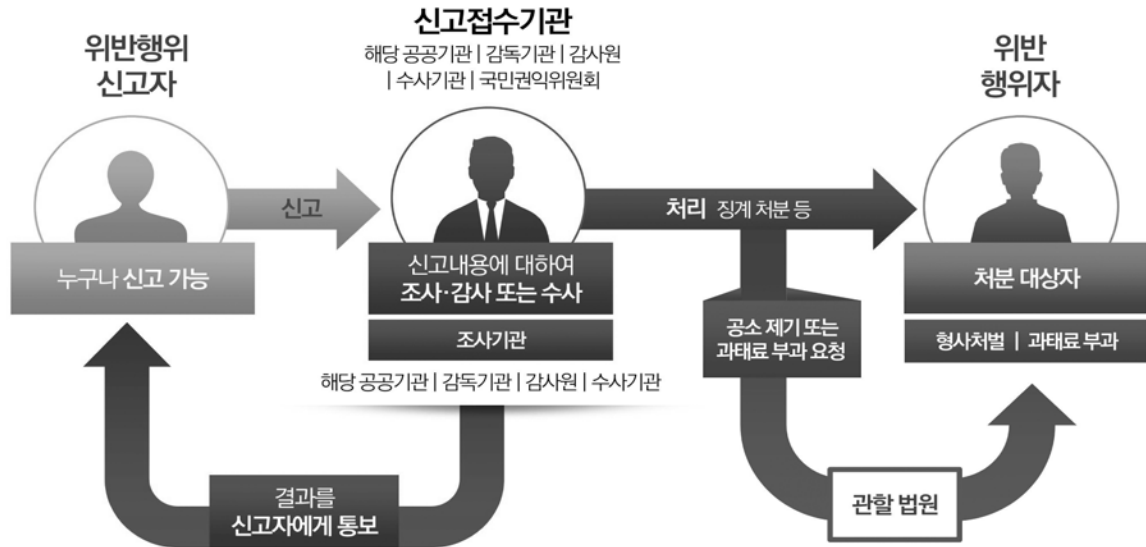
배우자 금품등 수수 사례

○○시 문화정책과장 A의 배우자 C가 남편의 고교 동창이며 ○○시에서 문화창작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오페라 감독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 신고·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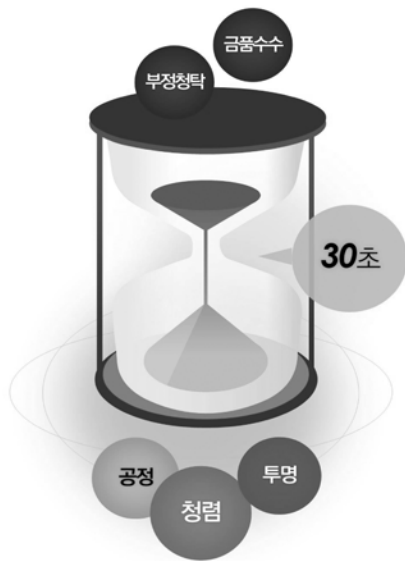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





누구도
부정청탁·금품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기전 **30초**,
받기전 **30초**.

30초의 생각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제정배경

-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 일반국민의 59.2%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2. 제정경과

-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 보고 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 공개토론회('11.10월, '12.2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연구('12.4월~7월), 광주·대전·부산 등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12.4월~5월) 등
-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13.7.30)
 - 관계기관 의견 조희·협의('12.5월~'13.6월), 입법예고('12.8.22~'12.10.2)
 - 차관회의('13.7.26), 국무회의('13.7.30) 의결
- 정부안 국회 제출('13.8.5)
 - 정무위 공청회('14.7.10),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15.1.8 등 6회 심사)
 - ※ 법안소위 : '14.4.25, '14.5.23, '14.5.27, '14.12.2, '14.12.3, '15.1.8
-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5.1.8),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포함
- 법사위 공청회('15.2.23),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5.3.3)
- 국회 본회의 의결('15.3.3), 공포('15.3.27, '16.9.28 시행 예정)

3. 제정의의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부정의 시작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들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

□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들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 청탁금지법은 청탁받은 공직자들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

II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Q & A

○ 국회의원도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대상직무에 한정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 인 · 허가 · 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 · 면제 직무
- 채용 ·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 탈락 직무
- 각종 수상 · 포상 등 선정 · 탈락 직무
- 입찰 ·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 · 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 · 기금 등의 배정 · 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관련 직무
-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등 관련 직무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부정청탁 예외사유(제5조제2항)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위반시 제재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 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 & A

-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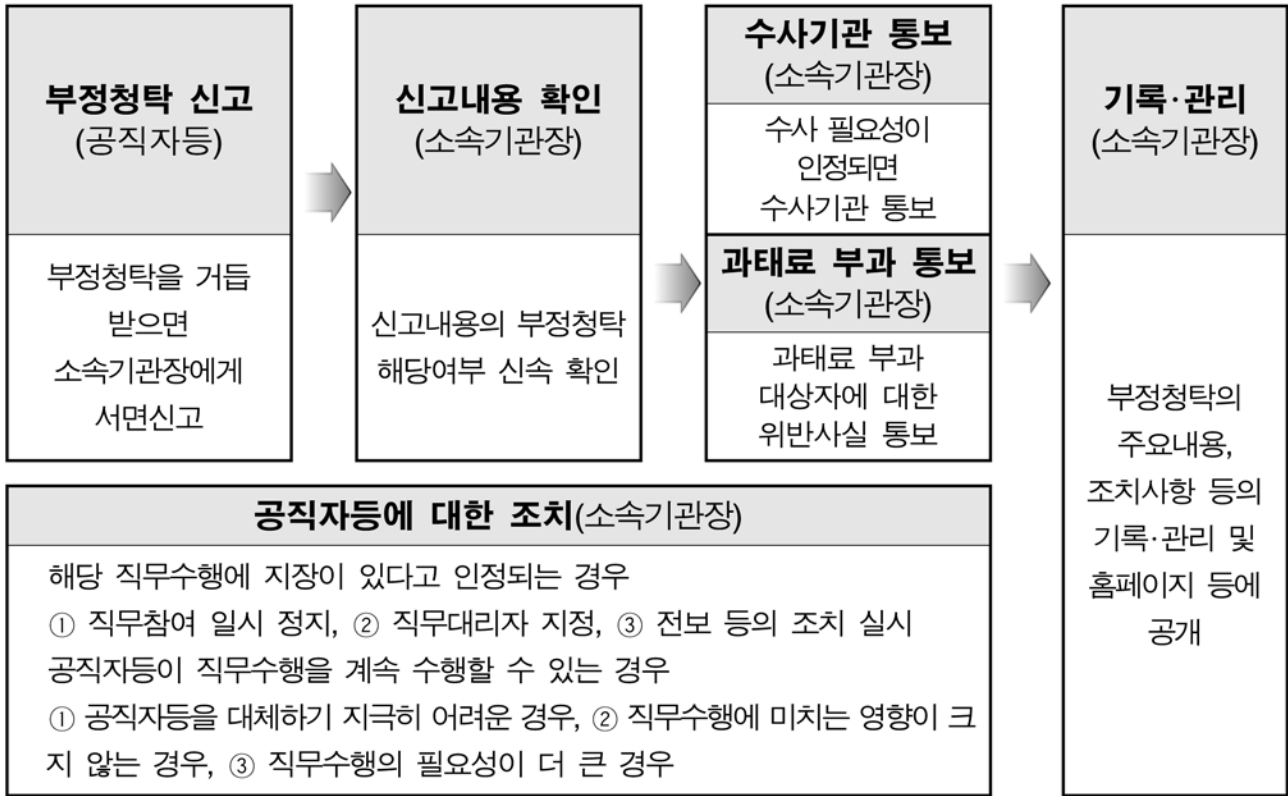
☞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여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이해당사가 직접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하는 부정청탁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
 -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담당관)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담당관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담당
 - 그 외 소속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 통보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Q & A

-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100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의 종류를 달리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하는 경우 기준과 근소한 범위 내에서는 죄질의 경중에 대한 의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범죄가중법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최하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임

-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Q & A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하여 금품수수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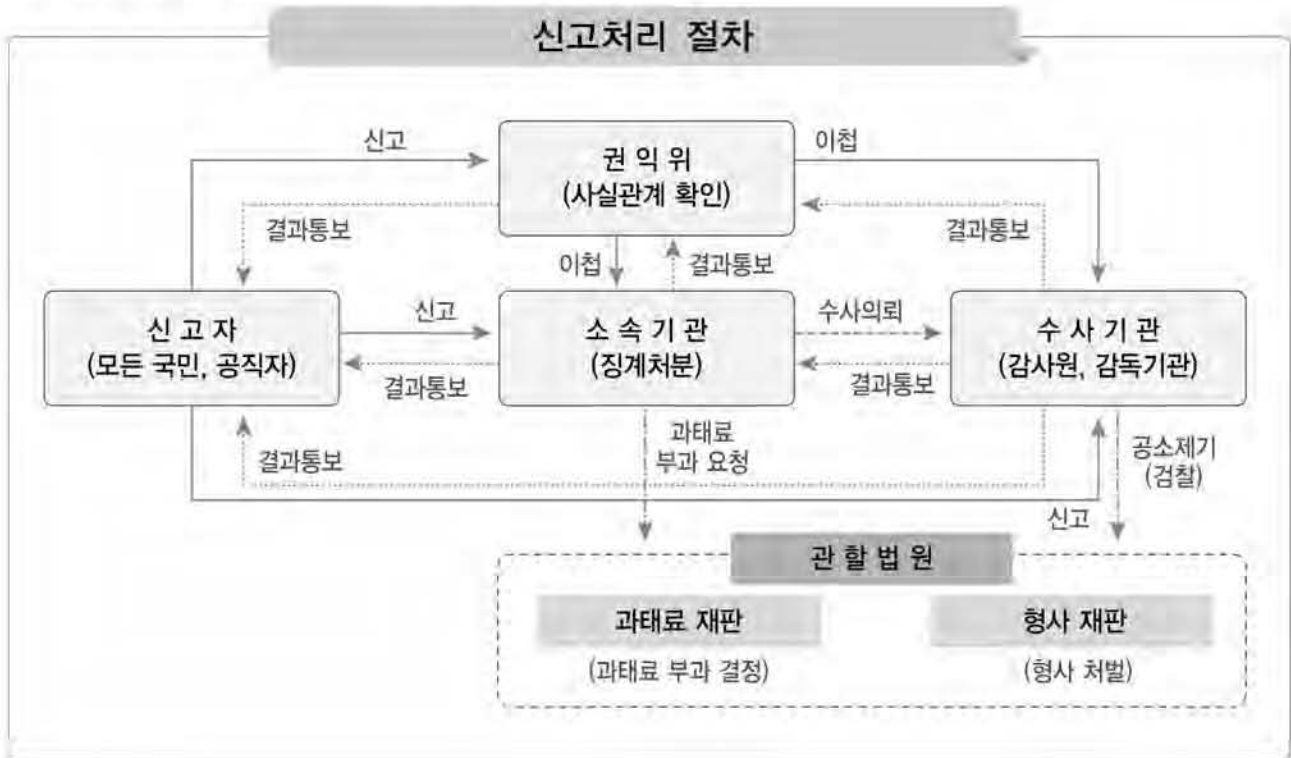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 신고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의 위원회에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신고접수기관의 신고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내용을 확인 후 조사 기관에 이첩

○ 조사기관(권익위를 제외한 신고접수기관)

-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재조사 요구

-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Q & A

-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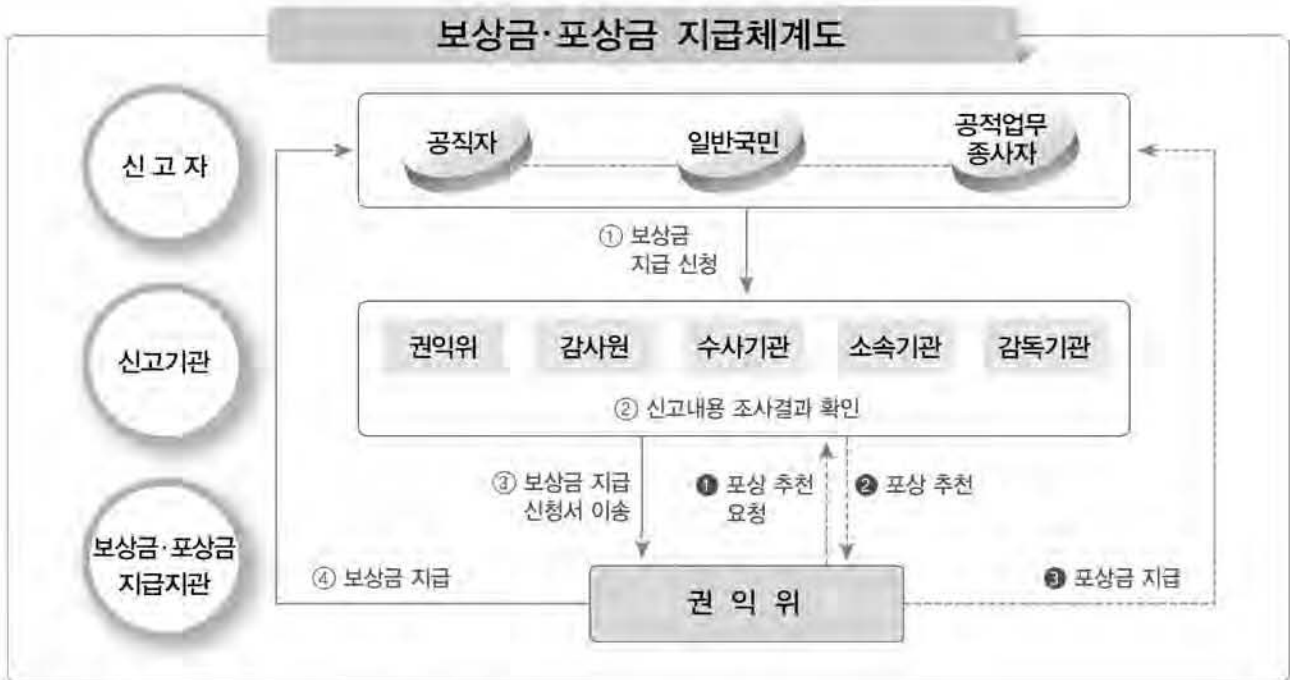
그 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

5 징계 및 벌칙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의 사업주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Q & A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 임과 동시에 그 행위를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요 내용**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부정청탁 금지 등	▶ 부정청탁의 신고방법(제3조)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제4조) ▶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방법(제5조)	
금품등 수수 금지 등	금품등 수수 금지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제7조) ▶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제8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기준 등(제9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제10조) ▶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제11조)
	▶ 제공자에게 금품등,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비용의 청구(제12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신고내용의 확인 등 및 의견청취등(제13조·제14조) ▶ 신고의 이첩,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제15조·제16조·제17조) ▶ 조사기관의 처리,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등(제18조·제20조·제21조) ▶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제19조) ▶ 수사기관의 수사 등(제22조) ▶ 위반행위의 기록·관리방법(제23조) ▶ 징계기준(제28조) ▶ 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제29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30조)	
보호·보상 등	▶ 포상금 등의 지급 업무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24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제25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제26조)	
공공기관 운영 지원	▶ 윤리강령(제2조) ▶ 교육(제27조)	

1. 윤리강령

-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는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제정 근거 마련(안 제2조)

- ※ 윤리강령에 규정될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청탁행위의 금지·제한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
-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
- 그 밖에 업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지원

-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권익위는 통보받은 윤리강령이 법 또는 시행령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보완 요청 가능

2. 부정청탁의 금지 등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을 추가로 규정(안 제4조)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조치 가능(법 제7조제4항)
- 그 외에 추가 조치사항인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규정
- '전보' 조치의 악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보' 조치를 시행하도록 조치순서를 규정

□ 부정청탁의 내용·조치사항의 공개

-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고려사항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
- (공개여부 결정) 소속기관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
- ※ 공개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 과태료 부과,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공개범위) 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부정청탁의 일시, 목적, 유형, 소속부서,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내용등을 명시
- (공개방법) 국민의 접근성과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강화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안 제6조, 별표 1)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의 범위 및 함께 수수한 경우 가액 범위를 명시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 경조사비 : 각종 부조금 및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규정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절차

- 민간부문의 경우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에 의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사례금이 정해지도록 차별화된 기준 설정(안 제9조, 별표 1)
- (공직자) 기존 지급기준인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간당(기고의 경우 1전당) 상한액 설정
 -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 한도까지 인정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해야 함

- (공적업무종사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다만, 공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상한액은 1회 100만원으로 설정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신고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신고의 보완(안 제10조)

신고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시간,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세부 내역, 요청자,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신고의 보완 : 사례금 액수나 강의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등 종료 후 즉시 보완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신고사항 및 신고기간을 명시하고 초과사례금 반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조)

신고사항 :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 반환 여부 등

신고기간 :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반환절차 :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

4.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 방법

□ 부정청탁의 신고방법 등 관련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부정청탁의 내용 등 신고의 내용

신고방법 :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함께 제출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 등 관련

- (공직자등)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7조)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 금품등의 종류·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

신고방법 :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술신고 후 서면 제출하고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함께 제출

- (공공기관의 장) 인도 받은 금품등의 처리방법을 명시(안 제8조)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는 소속기관장에게 송부

소속기관장은 금품등을 보관하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입조치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처리 절차(이의신청 및 재조사 절차를 포함)가 종료 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다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부패·멸실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 즉시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를 하고 금품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인도자에게 통보
-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을 인도 받은 상태 그대로 처리하여야 하며, 촬영·녹화한 사진·영상과 위반행위의 기록을 함께 송부

□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의견청취

- (신고내용 확인) 조사기관·권익위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 요청(안 제13조)

※ 확인사항 : 신고사항,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다른 기관에 동일한 신고 여부,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등

- 조사기관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의 소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 (의견청취) 권익위는 신고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설명, 자료·서류 등 제출, 의견진술 등 요구 가능(안 제14조)

□ 권익위의 신고처리 : 신고의 이첩, 송부

- (이첩) 신고사항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원, 소속기관, 수사기관 등에 이첩(안 제15조)

감사원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 그 감독기관 :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종결) 허위신고,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첩하지 않고 종결(안 제16조)

※ 이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신고 가능

- (송부)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안 제17조)
- ※ 해당 공공기관은 권익위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 조사기관의 처리 등

- 조사기관은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 또는 징계 등 시행(안 제18조)
 - 다만, 허위신고,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종결 가능
 - 소속기관 : 수사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 징계절차 진행
 - 감독기관·감사원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 필요시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 필요시 소속기관에 통보
- 공공기관장은 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청렴자문위원회**(자문기구) 구성·운영 가능(안 제19조)
 - 심의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자격 등에 대해 규정
 - 심의사항 : 신고처리, 부정청탁 공개 등 관련(자문기구로서의 역할)
 - 구성 : 10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
 - 위원자격
 - 판사·검사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3년 이상 부패방지과 관련된 업무수행)
 - 박사학위 취득 후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또는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과 관련된 업무 수행
 -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조사등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등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와 권익위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안 제20조)
 - ※ 통보사항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포상금·보상금 지급 사유 해당 여부, 이의 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 등
- 신고자는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권익위 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안 제21조)

- 이의신청을 받은 권익위 또는 조사기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
 - 권익위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
 -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요구를 받은 조사기관은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시 필요한 조사등을 실시
 -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재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 제기 불가

□ 수사 개시·종료 통보

-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안 제22조)

□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등

-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법 위반내용, 신고 내역 및 처리 내역 등을 기록한 자료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관(안 제23조)
 - 공공기관의 장은 인도 받은 금품등을 촬영·녹화한 사진·영상과 금품등의 종류·성질·가액 등을 기록한 자료도 함께 보관
- ※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 처리실적 등을 매년 권익위에 제출

5. 신고자 보호·보상 등

□ 보상금·포상금 지급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절차 등 마련

- 권익위는 보상금·포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설치 가능(안 제24조)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
 - 조사기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안 제25조)
 -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대상자 추천
- ※ 권익위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함께 제출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보상금·포상금 지급업무,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가능(안 제2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보상금·포상금 관련 정보, 교육 및 서약 실시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
 - 공공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6. 기타

□ 교육

-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및 서약을 연 1회 이상 실시, 이를 위한 계획 수립(안 제27조)
 - 권익위는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교육 지원

□ 징계기준 마련 근거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 유형, 정도, 과실 경중, 정상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28조)

□ 과태료 부과 취소절차

-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안 제29조)
 - 과태료 부과 취소 신청자는 인적사항, 신청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과 형사판결 관련 자료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제출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법 위반 관련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안 제30조)

※ 고유식별정보 등 :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연락처·직업 등 인적사항



청탁금지법
- 시행령(안) 2단 비교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마목에 따른 언론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윤리강령이 법 또는 이 영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방법)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부정청탁을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부정청탁의 내용 등 신고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전항 각호의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제8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지 여부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법 제7조제7항·제8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는 부정청탁의 일시, 목적, 유형, 소속 부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조치 및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7항·제8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 또는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사유가 있는 날 2. 그 외의 경우 : 부정청탁에 대한 조사·재판 등의 처리절차가 종료된 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6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별표 1과 같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제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제6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 2.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위원회 : 소속기관장에게 송부 나. 소속기관 :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입조치 3.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처리절차(이의신청 및 재조사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다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금품등을 인도 받은 상태 그대로 처리하여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촬영·녹화한 사진·영상과 제23조에 따른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부패·멸실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3. 강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세부 내역 5.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사례금 액수나 강의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는 즉시 초과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한다)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반환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관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제7조 제2항·제6항, 제9조제1항·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 및 위원회는 제1항제4호, 제2항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 및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사기관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 제출요구 -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2.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기관 3. 법에 따른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4.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송부)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기관의 처리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제6항, 제9조제1항·제6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신고를 다른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등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 시행·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 제2조제1호 나목부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마목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부패방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위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청렴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조사등 결과 등의 통보) ① 조사기관이 법 제7조제2항·제6항, 법 제9조제1항·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와 위원회(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조사기관 또는 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포상금·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3.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조사기관이나 위원회가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제2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3항의 기간 내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4항 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시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리거나 위원회에 통보(위원회로부터 재조사를 요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제6항에 따른 조사등 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제6항, 제9조제1항·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8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3. 위반행위 관련 신고 내역과 처리 내역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4.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해당 금품등의 종류·성질·가액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과 제8조제2항의 사진·영상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과 같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1항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등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24조(포상금 등의 지급 업무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검토 사항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지급업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무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보상금 지급신청 등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서약 실시 결과를 제1항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익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 및 서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 및 서약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교육 및 서약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8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9조(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 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민감정보,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부칙 <제1327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 9. 28.부터 시행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제6조 관련) 1.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2. 금품등의 종류 가.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나.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다.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 가목의 음식물과 나목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5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1.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table><tr><th>구분</th><th>장관급 이상</th><th>차관급</th><th>4급 이상</th><th>5급 이하</th></tr><tr><td>상한액</td><td>50</td><td>40</td><td>30</td><td>20</td></tr></table>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은 구분된 직급에 상응하는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table><tr><th>구분</th><th>기관장</th><th>임원</th><th>그 외 직원</th></tr><tr><td>상한액</td><td>40</td><td>30</td><td>20</td></tr></table> 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다)의 경우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회 100만원으로 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	30	20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	30	20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3)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공공기관에 파견 나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4)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등의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5) 1)부터 4)까지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상 지위·직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라.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